

통계관리규정

[소관:정보고객정책과]

제정	2003. 4. 7.	특허청훈령 제366호
개정	2004. 4.12.	특허청훈령 제384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진부개정	2008. 6.27.	특허청훈령 제559호
개정	2020.10.19.	특허청훈령 제10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통계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통계"라 함은 특허청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행정과 관련된 수량적 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생산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생산·변경·공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통계행정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통계업무의 기획, 생산, 공표, 변경, 승인, 협의, 운영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행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통계책임관"이라 함은 통계법 제6조에 의거 지식재산통계의 효율적인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통계업무를 총괄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통계담당자"라 함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소관통계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제2장 통계의 이용 기반 구축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책임관은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행정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지식재산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작성·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품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통계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공표·보급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통계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기획국장이 효율적인 통계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관을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행정업무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통계담당관은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통계작성부서) ① 통계생산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행한다.

1. 특허청 본청소속 각 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감사담당관
3. 심사품질담당관
4. 운영지원과
5. 심판정책과
6. 서울사무소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통계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및 통계행정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통계담당자는 통계작성부서 소관통계의 실무를 담당하며, 통계담당관과 통계업무 협의를 담당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통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 시행 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전문교육기관의 통계교육과정을 활용하거나 통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의 기획·조사·처리·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통계의 품질진단 및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2. 통계자료의 관리·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그 밖의 통계의 작성·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담당자에 대한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통계지침)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의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할 통계의 종류, 통계생산 소관부서, 작성시기 및 기준, 공표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는 지식재산통계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책임관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요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통계수요조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통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경우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변경, 공표 및 발간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변경)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이미 작성된 통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사용목적의 통계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에 대한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이 각 통계작성부서의 내용을 취합하여 일괄하여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신규작성 또는 변경된 통계를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서식 또는 행정절차의 변경·개정으로 인하여 신규통계의 발생·기존통계의 소멸 또는

통계지표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소관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가공 통계의 작성요청)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업무에 사용되는 조사 및 가공 통계의 작성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통계자료의 작성시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책임관과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부서에 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는 외국의 주요통계자료를 수집 또는 취득하였을 때에는 부분 1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계책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의 공표 및 제공) ① 통계는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공표주기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통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부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사용목적·범위의 타당성, 유사성 및 중복성 등과 관련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통계를 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외부에 제공되는 통계현황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자료의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는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통계를 작성시기별, 작성내용별, 작성주체별 및 작성목적별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통계생산현황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보호)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 및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2. 미공개출원서류의 상세내용을 포함한 통계
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인을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4. 기타 특허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② 통계담당자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간행물(지식재산 통계연보·월보·속보, 반기별 주요통계 등)은 통계책임관이 발간한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간행물의 발간주기등 기타의 사항은 지식재산통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의해 발간한 통계간행물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통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지식재산통계의 생성, 집계, 처리 및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제18조(통계홈페이지) 통계책임관은 지식재산통계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홈페이지를 개설·운영 할 수 있다.

제5장 지식재산통계위원회

제19조(지식재산통계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유통, 품질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지식재산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통계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특허청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
2. 지식재산권, 특허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주요사항을 심의·조치한다.

1. 지식재산통계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사통계기획안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계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559호, 2008. 6. 2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